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0. 10 선고 2023가단1120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, C

피고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

변론 종결2024. 8. 29.

판결 선고2024. 10. 1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) 피고와 E(F생, 개명 전 G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2. 10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54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7. 9.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50,000,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나아가 원고는 E와 기업신용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.

나. E는 2022. 10. 11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60,000,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이후 E는 2022. 10. 13.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3,200,000원, 채무자 G,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2023. 4. 11.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나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(2022. 10. 11.) E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① 경북 영천시 I 주택축물 제1동, ② 경북 영천시 I 대 1334㎡, ③ 경북 봉화군 J 전 298㎡ 중 1/2 지분, ④ 경북 봉화군 K 대 660㎡ 중 1/2 지분, ⑤ 경북 봉화군 L 과수원 6266㎡ 중 1/2 지분, ⑥ 경남 거제시 M 임야 1321㎡ 중 20/1321 지분, ⑦ 경남 거제시 N 임야 4958㎡ 중 330/49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.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E의 적극재산의 가액과 소극재산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.

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E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의 매매행위로 평가(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)되거나,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는 E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E의 무자력을 주장하거나,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E가 자신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

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'사해행위'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. 원고로서는 E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그렇다면 피고의 선의 여부, 가액배상청구 가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동현

별지

1) 원고는 2024. 5. 8.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E에 대한 이행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.